



AI 관련 농가(업체) 경영안정 지원지침

〈지원지침 요약〉

1. 소득안정자금 지원

- 지원대상 : 오염·경계지역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
- 지원기준
 - 이동제한전 출하 후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소득 손실액과 출하 제한에 따른 입식지연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전
- 지원내용
 - 농가당 1,400만원 한도 보조지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
2.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비 지원

- 지원대상 : AI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
- 지원기준
 -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재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(용자금) 지원
- 지원조건
 - 연리 3%, 2년거치 3년상환
 - 1회 사육능력×축종별 수당 지원한도

3.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- 지원대상 : AI 방역조치에 따라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을 제한 받은 부화장, 사료업체 등에 한하여 용자금 지원
- 지원조건
 - 연리 3%,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용자
 - 영업 중단기간 동안의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

〈세부 지침〉

1. 소득안정자금 보조 지원

1) 지원목적

- 적법한 방역조치에 의하여 소득손실을 입은 농가의 손실보전차원에서 지원

2) 지원 대상

- AI로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오염·경계 지역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
 - 이동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가금류 및 계란을 출하한 실적이 있으며, 출하·도태 후 병아리를 재 입식하지 못한 농가
 - 계열주체와 계약 사육하는 (계열)농가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객관적으로 출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 (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)
 - 계열주체 발급 출하증명서, 출하자 성명이 기재된 계근표 등

3) 지원기준

- ① **경계지역 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** : 육계(토종닭 포함)·오리
- 지급액 : 미입식 수수×수당소득×(농가별 입식제한기간/사육기간)
 - ※ (농가별 입식제한기간/사육기간)은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농가별 지원액

- 은 14백만원을 상회할 수 없음
- 미입식수수 : ①빈축사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한 추정사육수수와 ②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 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

- 육 계 : 연간 6회전, 사육기간 35일, 휴지기간 25일
- 토종닭 : 연간 3.5회전, 사육기간 75일, 휴지기간 20일
- 오리 : 연간 6회전, 사육기간 45일, 휴지기간 15일
- m²당 사육수수 : 육계 개방계사 15수, 무창계사 22수, 오리 4수
- 농가별 입식제한기간 : (해당지역 이동제한기간-휴지기간)+(이동제한일-최근출하일)

- 수당소득 : 육계 335원/수, 토종닭 375원/수, 오리 521원/수
 - 육 계 : 최근 5년 최저·최고소득 년도를 제외한 3년 평균소득 적용
 - 토종닭 : 토종닭은 공식자료가 없어 2007년 소득 적용(토종닭협회)
 - 오 리 : 오리는 공식자료가 없어 2007년 소득 적용(한국오리협회)
- 같은 농가내에 축사 동별로 입식·출하 시기가 다른 경우 축사 동별로 입식제한기간과 미입식수수를 산정하여 지급액을 합함
- ② **역학관련 농장** : 육계(토종닭 포함)·오리
- 지급액 : 미입식 수수×수당소득×[출하일

+ 정책 II

령 초과일수 또는 출하 후 미입식 일수¹⁾/사육기간

※ 미입식수수 : ㉠이동제한기간 중 출하 일령을 초과한 사육군별 수수 또는 ㉡출하 후 이동제한으로 입식하지 못한 수수

※ (농가별 출하일령 초과일수 또는 사육군별 출하 후 미입식 일수/사육기간)은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, 농가별 지원액은 14백만원을 상회할 수 없음

③ 산란계(케이지사육)

○ 지급액 : 미입식수수×수당소득×(농가별 입식제한기간/365일)

※ 농가별 지원액은 14백만원을 상회할 수 없음

- 미입식수수 : ①빈케이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사육수수¹⁾와 ②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 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

- 산란계 : 사육기간 72주, 노계 도태 2~4주 후 입식, 휴지기간 14일
- 추정사육수수 = 빈케이지수×케이지당 평균수수
- 농가별 입식제한기간 : 해당지역 이동제한기간-[휴지기간-(이동제한일-최근출하일)]-[휴지기간-(이동제한일-최근출하일)]이 0보다 적은 경우 0일로 함

○ 수당소득(365일 기준) : 1,897원/수

- 최근 5년 최저·최고소득 년도를 제외한 3년 평균소득 적용(농관원 자료)

4) 재원 : 축산발전기금 50%, 지방비 50%

○ 지방비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발기금 우선지원

5) 지원조건

○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, 농장내 소독·질병발생시 조기 신고 등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지원

6) 지원제외

- 소독 소홀, 출입통제 위반, 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·역류·이동제한 미이행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위법농가
-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인이 아닌 경우 등

7) 지원기간 및 대상의 특례

- 이동제한일부터 3개월 이전기간보다 더 일찍 출하하였다라도
- 이동제한 기간 중에
 - 계열주체의 가축입식일정에 해당 미입식 농가가 포함되어 있고
 - 같은 시기에 입식하기로 한 이동제한 지역 밖의 농가가 예정대로 입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

1) 이동제한명령 당시 비어있는 축사가 휴지기간 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식 및 출하관련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

8) 지원체계

- 해당 시·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
- 시·군에서는 지원대상 농가현황을 첨부된 별첨 1서식에 의하여 시·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
 - 시·도는 시·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거쳐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 금액을 확인
 - 소득안정자금은 출하증명, 축사면적 등의 객관적인 확인증명이 필요하므로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
- 농림수산식품부는 시·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·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
- 시·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,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(시·도 별 자금지원 완료 후)

○ 지원내용

-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
- 다만, 시기를 나누어 입식하더라도 총 지원수(두)수는 1회 사육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1회 사육능력은 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(농림부 고시 제2004-8호)” 적용

〈축종별 지원한도〉

축종별	지원단가	비고
산란계	(중추) 3,500원/수 (병아리) 1,100	2008년 1~4월 평균
육계	(중계) 2,000 (실용계) 320 (토종닭) 490	2008년 1~4월 평균
오리	(중오리) 12,000 (새끼오리) 900 (F1) 4,000	2008년 1~4월 평균
기타	(메추리) 150원/수	2008년 1~4월 평균

2.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비 지원

1) 목적

-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을 위한 가축 입식 자금 지원으로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

2) 사업개요

- 사업주관 : 시·도(시·군)
- 지원대상 :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농가·업체

〈전국 살처분 현황〉

(단위 : 호, 천수, 백만원)

구 분	살처분 현황(전국)	입식자금 소요액
총 계	농 가 수	19
	사 육 수	1,791
산란계	농 가 수	159
	사 육 수	8,911
육 계	농 가 수	69
	사 육 수	449
토종닭	농 가 수	19
	사 육 수	186
중오리	농 가 수	2
	사 육 수	312
오 리	농 가 수	123
	사 육 수	1,510
기 타	농 가 수	38
	사 육 수	2,220
합 계	농 가 수	429
	사 육 수	15,379

+ 정책 II

- 지원조건 : 연리 3%, 2년거치 3년상환
- 용자은행 : 농협중앙회, 용자금 취급을 희망하는 은행
- 지원한도 : 1회 사육능력 축종별 수(두)당 지원한도
- 사업신청 기한 :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가축입식 기간 : 용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내 입식완료
 - 해당 시·군에서는 농가별 가축입식 여부를 확인하여 계획대로 입식 되도록 하고, 실적에 미달될 경우 해당수(두)수분 지원액은 회수
 - 소요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

3) 사업체계

- 농가는 입식하려는 가축을 축종별(육계, 산란계 등), 성장단계별로 분류하여 해당 시·군에 자금신청
 - 월별 입식계획과 용자희망 은행을 반드시 명시하되, 농가(업체)별 “자금신청서 서식”은 시·도별 편의에 따라 작성하여 사용
- 해당 시장·군수는 농가(업체)별 지원계획을 시·도에 제출
 - 농가(업체)별 입식 희망수수와 축종별 한도액을 곱하여 지원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
-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(축산경

- 영팀)에 자금지원 요청(제출서식 별첨 2)
- 축산경영팀장은 농가(업체)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, 관계부서(축산정책팀 등)와 대출취급기관(은행), 축발기금사무국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통보
-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용자를 실행하고,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하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교부
 - 시중은행의 이차보전금 신청주기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통보
- 시·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(시중은행)과 협조하여 가축입식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

4) 금후 계획

- 지원대상자 조사 및 확정 및 용자실행
 - 용자실행 후 시·군 주관으로 가축입식 현황은 별도 조사
- 사업실적 보고 및 이차보전금 지급신청 (2008년 하반기)

3. 긴급경영안정자금 용자 지원

1) 목적

-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가금산업 조기안정화에 기여

2) 사업개요

- 사업주관 : 지방자치단체

- 지원대상 :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를 지원
- 지원내용 : 원료구입비, 인건비,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
- 지원조건 : 연리 3%, 2년거치 3년상환
- 융자은행 : 농협중앙회, 외환은행·전북은행 등 시중은행
- 신청기한
 - 시·군에서는 동 지침을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체별 사업신청 접수를 마감하고,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
- 지원한도 :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
 - 부화장 : 1회 부화능력×3회×부화비용×10(비용의 10배)
 - 도계(압)장 : 1일 도압두수×정지일×구입가격(원/수)
 - 유기비료공장 : 일산능력×정지일×계분 판매이익(원/톤) / 2
 - 계란집하장 : 일산능력×정지일×계란 구입가격(원/개)
 - 닭·오리가공공장 : 일산능력×정지일×구입가격(원/수)
- ※ 첨부(별첨 3)된 “업체현황”에 기재된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

3) 사업체계

- 용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(자금운용계획 포함)를 작성하고 여기에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·군수에

계 신청

-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, 신용조사서는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 준용

- 자치단체장은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했는지, 신용조사서상의 대출가능액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비교·검토하여 시장·군수에게 제출
- 시·도지사는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원부서에 자금지원 요청
 - 부화장(축산경영팀), 사료업체(축산물 위생팀)
- 사업지원부서에서는 관계부서(축산정책팀 등)와 축발기금 대출취급기관(은행, 축발기금사무국)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통보
- 대출취급기관은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용자를 실행하고, 우리부에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교부
 - 시중은행의 이차보전금 신청주기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통보
- 시·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(시중은행)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

4) 금후 계획

- 지원대상자 확정 및 용자실행
 - 지자체에서 확인·신청한 범위내에서 대상자 확정 후 용자실행
- ※ 이차보전 대출취급 기관으로 농협·

+ 정책 II

외환은행 · 전북은행

- 사업실적 보고 및 이차보전금 지급신청 (2008년 하반기)

5) 사업체제도

“살처분농가 가축입식비 지원사업”과 동일 

<별첨 1>

□ 이동제한지역내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

- ○ ○ ○ ○

농가명(축종)	주 소	주민등록번호	미입식 수수	소득안정자금소요액			비고
				국비(기금)	지방비	합계	
홍길동(육계):							
합 계 ()							

※ 미입식 수수는 본문중 지원기준의 산정방법에 따라 기재하되, EXCEL 서식으로 작성

□ 농가별 지원액 산출 계산표

- 닭 · 오리

해당지역 이동제한기간 (a)	휴지기간 (b)	이동제한일-최근출하일 (c)	농가별 입식제한기간 (d=a-b+c)	사육기간 (e)	농가별입식제한기간/사육기간 (f=d/e)	조정 (g=f, 다만 f가 1보다 큰 경우 1로 조정)	미입식 수수			수당 소득 (i)	농가별 지원액 (j=h×i×g)	비고
							출하 실적	축사기준 추정	적은 수수 (h)			

※ 주) (b) 휴지기간 : 육계 25일, 토종닭 20일, 오리 15일 (e) 사육기간 : 육계 35일, 토종닭 75일, 오리 45일 (i) 수당소득 : 닭 335원, 토종닭 375원, 오리 521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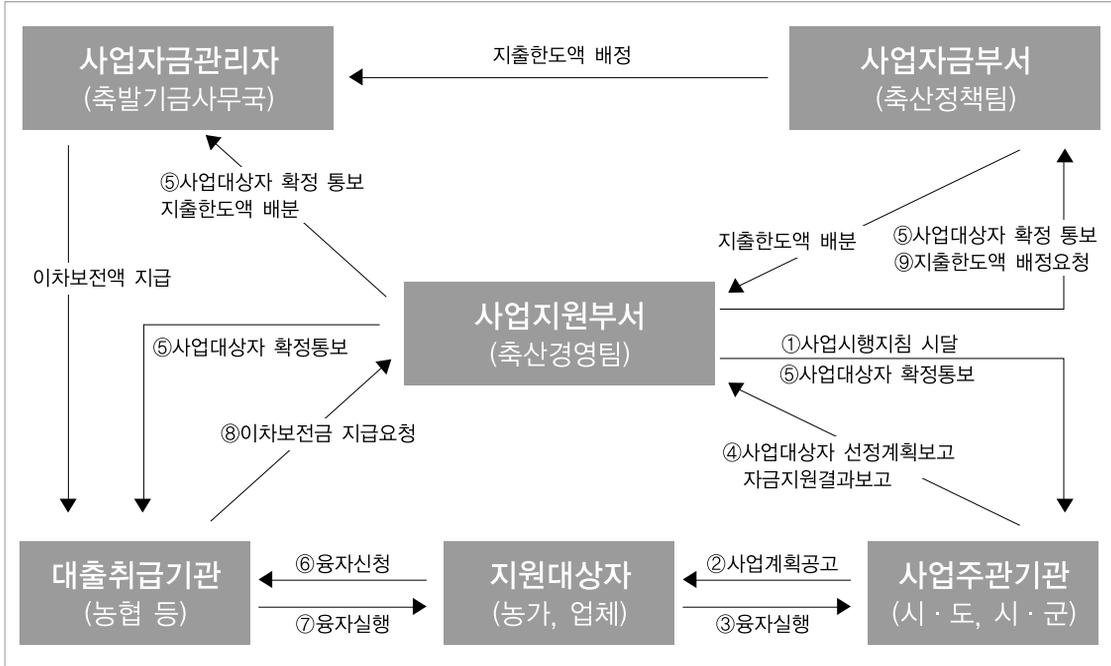
- 산란계

해당지역 이동제한기간 (a)	휴지기간 (b)	이동제한일-최근출하일 (c)	조정(d=b-c, 다만 d가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함)	농가별 입식제한기간 (e=a-d)	농가별입식제한기간/365일 (f=e/365)	미입식 수수			수당 소득 (h)	농가별 지원액 (i=g×h×f)	비고
						출하 실적	축사기준 추정 (g)	적은 수수 (g)			

※ (b) 휴지기간 : 14일, (h) 수당소득 : 1,897원

<별첨 2>

□ 가축입식자금 지원 사업 체계도



□ 제출서식

- 가축입식자금 지원계획서(시·군 → 시·도 → 농림수산식품부)

농가명	축종	1회 사육능력	입식자금 신청현황		입식 희망월	융자 희망은행	계좌번호	비고
			수(두)수	금액				
		수(두)						
		수(두)						

※ 지원한도 미제시 축종(기타)에 대한 금액은 공란 처리

- 가축입식자금 지원결과(시·군 → 시·도 → 농림수산식품부)

도	시·군	농가명	입식자금		입식월	비고
			수(두)수	금액		
○○도	○○시					
	○○군					
합	계					